

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세부기준

2022. 06. 07. (제정)

2023. 01. 19. (2차 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6조제3항, 동법 시행령(이하 '령'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한전원자력연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생산·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원자력안전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①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②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한전원자력연료 「정보공개운영지침」을 적용한다.

제4조(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) ①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사무를 총괄·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환경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.

② 한전원자력연료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방사선관리부장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.

③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·지원
2. 소속 직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
3. 원자력안전정보 및 비공개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세부기준 작성·관리
4.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.

④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, 부분 비공개 문서 작성 등은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.

제5조(정보목록의 작성·공개) 한전원자력연료가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여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,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(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)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정보 중 [별표1]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원자력안전정보 유형별 비공개 세부기준은 [별표2]를 따른다.

제7조(비공개 원칙 및 방법) ① 제6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기준에 직접

해당하는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비공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음영 처리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비공개 처리사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한전원자력연료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보유문서의 공개 여부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서를 생산한 기관이 수립한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의 비공개 사유를 따른다.

제8조(정보공개 교육)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세부기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정보통신망 관리)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1.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 장치의 설치·운영
2.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3.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4.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·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
5. 그 밖에 회사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

제10조(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운영중인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한다.

1.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
2.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·부분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

②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

제11조(이의제기)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분류(제6조제1항 관련)

1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(법 제6조제1항제1호)

- 가. 을지연습, 직장예비군·민방위대 편성표, 대 테러대비 전략, 국가 기반 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,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
- 나.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인원, 시설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안전정보
- 다. 국가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정보
- 라. 국가 간의 회의·회담·협약·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주요 원자력안전정보
- 마. 기타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원자력안전정보
- 바. 정보통신망 구조도,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
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(법 제6조제1항제2호)

- 가. 위험물의 저장 위치,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, 통제/제한구역이 포함된 원자력안전정보
- 나. 방재, 방범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
- 다.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방사성 물질 등의 생산, 소지, 운반 및 관리체계에 관한 세부 정보
- 라.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사항 등이 포함된 원자력안전정보
- 마. 방사성물질 등 보안대책,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사고대응 민관협력체계 운영 관련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 관한 정보

3. 영업비밀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(법 제6조제1항제3호)

- 가. 공개 시 지적재산권 도용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서,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규제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(이하 '피규제자'라 한다)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중에서 당해 피규제자의 지적재산권 등 영업 비밀에 관련된 정보

- 1) 심사 및 검사 신청서에 첨부한 자료
 - 2) 심사질의서에 대한 답변 자료
 - 3) 검사지적사항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
 - 4) 안전규제 현안의 연구개발을 위해 제시한 자료
- 나.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기술·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
- 다.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·법인·단체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
- 라. 제조·가공 공정, 건축·토목 등의 공사, 운송·통신, 기계·설비, 컴퓨터 등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

4.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(법 제6조제1항제4호)

- 가.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. 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
- 나. 원자력 및 방사선규제사업 이행 중 참여자의 집 주소·집 전화번호·학력·주민등록번호·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
- 다. 「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

비고1.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다.

비고2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.

- 1)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
- 2)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안전정보
- 3)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
- 4)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- 5)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
[별표2]

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기준(제6조제2항 관련)

정보명	소관 부서	정보 형태	보유	생산	비공개 사유 근거 항목	비고
승계신고 (제19조)						
양도양수계약서 사본	총무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비공개
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	총무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비공개
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 증명서류	총무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비공개
합병계약서 사본	총무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비공개
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	총무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비공개
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(제35조)						
정련/가공 사업 허가신청서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부분공개
사업계획서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 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부분공개
위치·구조·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공사계획에 관한 서류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	부분공개
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	부분공개
안전관리규정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
정보명	소관 부서	정보 형태	보유	생산	비공개 사유 근거 항목	비고
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해체계획서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변경 신청서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부분공개
핵연료주기사업 허가 변경전후 비교표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 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부분공개
핵연료주기사업 허가 관련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방사선관리부 인허가현업부서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비공개
기록과 비치(제39조)						
핵연료주기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다목 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부분공개
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(제42조)						
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변경 전후 비교표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해체완료보고서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핵연료주기시설 해체 관련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비공개

정보명	소관 부서	정보 형태	보유	생산	비공개 사유 근거 항목	비고
핵연료물질의 기록과 비치(제49조)						
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다목 [별표1] 4. 개인정보 - 다목	부분공개
방사성동위원소,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(제53조)						
방사선안전보고서	방사선관리부	보고서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다목	부분공개
방사성동위원소등 변경허가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방사성동위원소등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RI, RG사용 등의 허가 관련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방사선안전관리자(제53조의 2)						
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 증명서류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다목	비공개
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또는 방사선 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다목	비공개
신고사용자의 경우 경력확인서류 및 교육이수 증 명서류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다목	비공개
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 증명서류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다목	부분공개
RI 등 기록과 비치(제58조)						
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사항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다목	부분공개
원자력안전법 운반신고(제71조)						
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다목	비공개
운반할 방사성물질 등에 관한 설명서	연료운송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다목	비공개
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 및 특수형 방사성물질의 설계 승인서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비공개
운반 변경 신고서 변경증명서류	연료운송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다목	비공개

정보명	소관 부서	정보 형태	보유	생산	비공개 사유 근거 항목	비고
방사성물질 등 운반용기 설계승인 (제76조)						
운반용기의 설계자료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안전성분석보고서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성능시험계획서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변경사항 증명서류, 설계승인서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검사(운반용기) (제77조)						
품질보증계획서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보고서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제작설비 명세서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시험방법,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시험, 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운반용기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 (서면심사대상)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해당 국가 설계승인서 및 제작검사 합격인증서류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해당국가 사용검사 합격 입증 서류	물자관리부 연료기술팀	서류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나, 라목	비공개
원자력안전법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(제92조의 2)						
해체계획서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나목 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부분공개

정보명	소관 부서	정보 형태	보유	생산	비공개 사유 근거 항목	비고
원자력안전법 보고 검사 (제98조)						
핵연료물질의 재고량에 관한 보고서	물자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다목	비공개
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비공개
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비공개
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비공개
선량계의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판독특이사항 현황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부분공개
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장교육결과	방사선관리부	서류		○	[별표1] 4. 개인정보 - 나목	비공개
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	연료운송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다목	비공개
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운반물 현황	연료운송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다목	비공개
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	연료운송부	서류		○	[별표1] 2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 지장 - 다목	비공개
특정기술 주제보고서 승인 (제100조)						
특정기술주제보고서	설계품질 인허가부	보고서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비공개
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보완요구사항 답변서	설계품질 인허가부	보고서		○	[별표1] 3. 영업비밀 - 라목	비공개

※ 공개 여부는 한전원자력연료가 생산한 문서에 한해서만 판단

- 보유문서는 문서를 생산한 기관의 판단을 따름 (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)

※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경우,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스킹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처리 사유서를 작성한 후 공개

[별지 제1호서식]

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처리 사유서

[정보명 : ○○○○]

순 번	위 치 (쪽, 줄)	비공개 근거 및 사유		비 고	담당 기관 (부서)
		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	비공개 세부기준 별표		